

## 안전운항 등을 위한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의 준수사항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에 의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와 선원 및 낚시어선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영업시간)

- ① 어선검사증서에 “야간항해가 금지됨”으로 표시된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일출 30분전부터 일몰 30분후까지로 한다
- ② 그 외의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03:00~22:00까지로 한다.

### 제4조(영업구역의 제한)

- ① 낚시어선업자는 다음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에서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해사안전법, 원자력진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에 의한 제한 및 통제구역
  2. 문화재보호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보호구역
- ②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갯바위 등 위험지역에 낚시인을 안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낙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① 안전운항과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

- . 낙시어선업자(선원)은 낙시어선의 안전 및 안전용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 나. 낙시어선업자는 낙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체계 (선주 또는 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를 유지하여 급작스런 기상악화 등의 상황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 다.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에 인명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라.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사고 발생시 인근 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마. 술에 취한 상태 및 약물(마약 등) 복용 상태에서 낙시어선의 조종을 금지한다.
- 바. 낙시어선 승선정원, 낙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이용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②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

- 가. 낙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구명조끼 미착용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낙시인을 승선시키지 않아야 한다.
- 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은 승선시키지 않아야 함
- 라. 낙시어선업자는 승선하려는 승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객명부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마. 낙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사.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무인도, 갯바위 또는 간출암에 승객을 안내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위해 입항 시 하선한 승객을 모두 신고 입항하여야 한다.

### ③ 수질오염의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한 사항

- 가. 해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쓰레기는 낙시어선 내

장소에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나. 낚시도구는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에 적합한 미끼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버려서는 아니 된다.

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서 규정한 포획 금지 수산동물의 종류, 체장(체중) 및 포획 금지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킬 경우 승객이 준수 할 사항을 교육시킨 후 운항하여야 하며, 승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낚시어선 승객 준수사항)

① 승객은 승선한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객은 해양오염방지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낚시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미끼의 안전성이 확보된 미끼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낚시 중 발생한 쓰레기 및 낚시도구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③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 수산동물의 종류,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④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낚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나. 낚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 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 .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 외 항행, 영업구역 이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등의 행위
- ⑤ 기상악화 등으로 낚시어선업자의 대피 요구가 있을 시 즉각 응하여야 한다.
- ⑥ 승객은 위험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영 등을 자제하여야 한다.
- ⑦ 승선하고자 하는 자는 승객명부 작성을 위한 낚시어선자 및 선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낚시어선업자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나목, 다목 및 제6조제2항의 나목, 다목의 규정은 201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고시의 폐지) 함평군 고시 제2008-12호(2008.03.21.), 제2013-60호(2013.10.14.)은 폐지한다.

